

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교통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간 2018.01 ~ 2019.12		
사업내용	○ 사업용 화물, 특수자동차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'차로이탈경고장치'를 장착		
사업비 (당해년도)	720,000천원	(국비)360,000천원	(시비)360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교통본부	택시물류과	양완수 2133-2310	서승완 2133-2341	오하나 2133-2339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0	(x360,000) 720,000	(x360,000) 720,000	(x-) 0
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	(x-) 0	(x-) 360,000	(x-) 360,000	(x-) 0
민간자본사업보조(이전재원)	(x-) 0	(x360,000) 360,000	(x360,000) 360,00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	○ 차로이탈경고장치	=	360,0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	1,800대*200,000원		
민간자본사업보조(이 전재원)	○ 차로이탈경고장치 1,800대*200,000원	=	36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으로 졸음운전 방지 등 도로교통 안전확보

사업근거

- 교통안전법 제55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)
 -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제14호(과태료 기준)
-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(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)
-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8.1.1.~2019.12.31.
- 지원대상 : 화물 및 특수자동차
- 사업수행주체 : 민간 운수업
- 추진방법 : 보조금 집행
- 사업의 주요내용 : 안전장치 부착 후 청구에 의거 보조금 지급

추진경위

-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예산편성 요청(국토교통부 '17.8.30.)

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20,000	
720,000	2018.01~2019.12	720,000	1,800대 분량 추진

4 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